

조교인사 규정

<제정 1980.03.01.>, <7차 개정 2011.11.16.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명학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조교의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대학교 조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구분과 정원) 조교는 일반조교와 연구조교로 구분하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 조 (직무) 일반조교는 소속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를 보조하여야 하며, 연구조교는 학부(과)의 실험실습, 수업 및 연구수행을 보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6.>

제 5 조 (자격) ① 일반조교는 본 대학교 학부 졸업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타교출신자를 임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11.16.>
 ② 연구조교는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이 임용코자 하는 부서에 부합하는 자라야 한다.

제 6 조 (임명) ① 일반조교는 제5조 제1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11.16.>
 ② 연구조교는 제5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11.16.>

제 7 조 (임용기간) ① 일반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1년 단임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6.>
 ② 연구조교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본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필요에 따라 1년한 그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8 조 (복무) ① 일반조교는 임용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본 대학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6.>
 ② 연구조교는 소속부서장 또는 교수의 지시를 받아 방학을 제외한 학기중 소속부서의 필요한 근무시간에 복무하되, 주당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16.>

제 9 조 (일반조교의 면직 및 징계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6.>
 1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<개정 2011.11.16.>

3-1-4 조교인사 규정

2.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파원이 되었을 때 <개정 2011.11.16.>

3.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<신설 2011.11.16.>

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<신설 2011.11.16.>

1. 법령,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<신설 2011.11.16.>

2.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<신설 2011.11.16.>

3.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<신설 2011.11.16.>

4. 기타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을 선동하였을 때 <신설 2011.11.16>
[제목개정 2011.11.16.]

제 10 조 (보수 및 장학금) ① 일반조교의 보수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 연구조교는 무급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재직하는 조교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, 다만, 임용기간은 임용당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조교의 임용기간은 제7조 제1항에 의한다.

[본부칙신설 2011.11.16]